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21 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임미애·어기구·정준호

이훈기 • 이용선 • 허성무

박지원・김 윤・조계원

정일영 • 박지혜 • 이재관

이재정 • 문대림 • 문금주

이병진 • 임호선 • 윤준병

김문수 · 권향엽 · 박해철

이원택 • 정진욱 • 최민희

정동영 의원(2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·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·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.

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,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계절

근로 정책협의체 설치·운영,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·운영 및 예산지원, 통합정보시스템 구축, 계절근로자 모집·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(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」(의안번호 제95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5(계절근로 프로그램 등)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·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(이하 "계절근로자"라 한다)에 대한 도입·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프로그램(이하 "계절근로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,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계 절근로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 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(MOU)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계절근로자의 선발·입국·교육·통역·체류·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3. 계절근로자의 고용·노무관리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운영과 관 련하여 운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계절근로자의 사용자의 인권침해 여부, 근로장소 이탈 여부 및 그 원인, 근로계약 외의 활동 여부,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⑦ 법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8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,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⑨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고, 정보통신망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94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1의2. 제19조의5제10항에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9조의5(계절근로 프로그램 등)
	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
	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
	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(이하
	"계절근로자"라 한다)에 대한
	도입・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
	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(이하
	"계절근로 프로그램"이라 한다)
	<u>을 시행할 수 있다.</u>
	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
	획,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
	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
	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
	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
	로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
	회"라 한다)를 두고 정책협의회
	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
	사항은 법무부렁으로 정한다.
	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
	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
	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
	산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
	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, 법인

-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 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 로 지정・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.
- 1.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 약(MOU)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계절근로자의 선발·입국· 교육·통역·체류·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3. 계절근로자의 고용·노무관 리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지 원에 관한 사항
- 4. 계절근로자의 사용자의 인권 침해 여부, 근로장소 이탈 여 부 및 그 원인, 근로계약 외의 활동 여부, 그 밖에 허가조건 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

#### 정한 사항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⑦ 법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⑧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 정기준 및 절차,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, 그 밖에 필요

제9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12. ~ 20. (생략)
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⑨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 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고, 정보통신망의 설치·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장관이 정한다.
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제3 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는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4조(벌칙)	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1의2. 제19조의5제10항에 위반
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
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
위를 한 사람

12. ~ 20. (현행과 같음)